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박수현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국가유산청장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공주시장·부여군수·익산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추진단을 두도록 함(안 제7조).
- 국가유산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체계적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술 연구 및 조사 활동과 교육 및 홍보 활동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II. 검토의견

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행정구역의 명칭을 명확히 하는 등 경미한 자구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Ⅲ. 관계 기관 의견

기획예산처는 안 제9조(연구 및 학술지원사업)¹⁾, 제10조(교육 및 홍보사업)²⁾에서 국가유산에 대한 연구·교육·홍보 등은 각 지역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전체적 관점에서 중요성·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바, 특정 지역 내 유산에 대해 지원을 강행규정화 할 경우 지역 간 형평성 훼손, 국가 재정운영의 경직성 등이 우려되므로 제정안의 강행규정(지원하여야 한다)을 재량규정(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제2조³⁾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⁴⁾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과 부속기관은 대통령령(직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7조⁵⁾에 따른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추진단은 국가유산청의 하부조직으로 판단될 수 있음에도 조직법령이 아닌 개별 법률

1) 안 제9조(연구 및 학술지원사업) ① 국가유산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체계적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술 연구 및 조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안 제10조(교육 및 홍보사업) ① 국가유산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3)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4)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직제 등)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의2의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2.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5) 안 제7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①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에서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토록 하는 경우 법령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전문위원 이 세 진)